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74
----------	-----

2020. 3. 24.(화)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최경천 의원 등 6인

나. 발의일자 : 2020년 3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3월 12일

-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경천 의원)

가. 제안사유

-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기존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던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별도 설치·운영하도록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6조의6)
- 도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 도 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위탁을 권장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마련을 규정함.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이강근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2019. 10.)’ 결과를 토대로, 충청북도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시설관리 등 위탁, 노인일자리 생산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및 판로 확보 조치 마련 등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6조부터 제6조의6까지는 ‘충청북도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현행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기능은 기존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해 왔으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도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는 도 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 것임.
 - 고령자비율 및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의 증가로 노인일자리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별도 위원회 구성·운영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제2항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시설관리 등을 위탁할 경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위탁을 권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제3항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마련을 도지사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안 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고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실적 현황 [2018.12.]

○ 충북 노인일자리 참여자(공공부문)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공익활동				
		행복지킴이			지역형 9개월	사회서비스형
		노노케어 9개월	노노케어 12개월	소계		
일자리수	26,088	2,147	3,455	5,602	14,274	739
사업비	69,799	5,518	11,747	17,265	36,684	5,828

구 분	취업형		기 타 (전담인력 인센티브)	道 자체사업
	시장형	인 력 파견형		
일자리수	1,831	1,431		2,211
사업비	4,211	215	3,760	1,835

○ 충북 노인일자리 참여자(민간부문)

(단위 : 명)

시군	일자리 창출 실적(목표)				4년간 ('14~ '17) 실적
	'14년 실적	'15년 실적	'16년 실적	'17년 실적	
합계	2,004	2,035	2,080	2,420	8,539

노인 취업실적(2018)							
'18년 목표	합 계			1)시니어인턴십 연계		2)시니어인턴십 미연계	
	업체수	취업 노인수	목표 달성율	업체수	취업 노인수	업체수	취업 노인수
2,000	669	2,056	102.8%	41	105	628	1,951

1) 시니어인턴십 지원대상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의 급여지원 등을 받고 취업한 실적

2) 시니어인턴십 지원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형태의 취업실적(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취업지원센터 실적자료)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4
----------	-----

발의연월일 : 2020년 3월 4일

발 의 자 : 최경천, 박상돈, 박형용,
심기보, 육미선, 이상욱

1. 제안이유

-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기존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던 노인일자리창출지원 위원회를 별도 설치·운영하도록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6조의6)
- 나. 도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 도 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위탁을 권장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마련을 규정함. (안 제8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 17호
- 다. 협 의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라. 비용추계 : 첨부제외 사유서 붙임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능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를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지사” 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로, “근로능력” 을 “노동의욕과 능력” 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시행계획 수립 등)” 을 “(추진계획 수립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창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계획” 을 “추진계획”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계획에” 를 각각 “추진계획에”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행계획” 을 “추진계획” 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을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위원회 설치·기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보급하기” 를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로, “설치·운영하되 그 기능은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 한다” 를 “둔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 를 “자문·심의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창출 시행계획” 을 “사업 추진계획” 으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 노인일자리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노인복지 관련 기관의 장

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장

4. 노인복지·일자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4(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의5(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6조의6(위원의 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을

“공공기관, 민간기관 또는 도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및”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생산품 우선구매)” 를 “(생산품 우선구매 등)”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예산지원)” 을 “(행정·재정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u>근로능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u>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u>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란 <u>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u></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u>도지사는</u>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연구·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u>근로능력이</u>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u>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 ----- ----- <u>노동의욕과 능력</u>----- -----.</p> <p>② (현행과 같음)</p>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 7. (생략)

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
-----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
-----.

② 추진계획 -----
-----.

1. ~ 7. (현행과 같음)

③ ----- 추진계획에---

----- 추진계획에 -----
-----.

④ ----- 추진계획 -----

-----.

제6조(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 자리를 보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되 그 기능은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 5. (생략)

제6조(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설치·기능) ① -----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

----- 둔다.

② -----
----- 자문·심의한다.

1. ----- 사업 추진계획 ----

2. ~ 5. (현행과 같음)

<p><신 설></p>	<p>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도 노인일자리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노인복지 관련 기관의 장 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장 4. 노인복지·일자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④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신 설></p>	<p>제6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p>

	<u>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u><신 설></u>	<u>제6조의4(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u> <u>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u> <u>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6조의5(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u>
<u><신 설></u>	<u>제6조의6(위원의 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
제7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도지사는 도내 <u>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u> <u>도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 노</u>	제7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① - ----- <u>공공기관, 민간기관 또는</u> <u>도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및</u> - -----

<p>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p>	<p>----- -----.</p>
<p><신 설></p>	<p><u>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시설 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u></p>
<p>제8조(생산품 우선구매) ①·② (생략) <신 설></p>	<p>제8조(생산품 우선구매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u></p>
<p>제9조(예산지원) ①·② (생략) <신 설></p>	<p>제9조(행정·재정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관계법령 발췌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 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제1호

○ 첨부제외 사유

- 이 조례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인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제6조의6) 및 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안 제7조), 생산품 우선구매(안 제8조) 등은 권고형식의 조항이며 지원 규모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